

골프공 결합상표 Volvik VIVID 중 일부 VIVID 사용 -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- 주지성

부정: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나2047941 판결



1. 선행상표등록 : Volvik Vivid - 출원일/ 등록일 : 2013. 2. 15./ 2014. 2. 14. 지정상품 : 제

28류(골프공 등 18건)

2. 후행상표등록 : xperon vivid - 출원일/ 등록일 : 2016. 12. 20./ 2018. 5. 24. 지정상품 :

제28류(골프공 등 20건)

3. 사용행태

원고 제품(이 사건 제품)	피고 제품
	

4. 선행 상표권자의 주장요지

피고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(가)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.

5.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- 원고청구 기각, VIVID의 출처표시 주지성 불인정

④ 원고는 'VIVID'가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제품의 매출, 판매개수, 광고비, 언론보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, 이 사건 제품, 포장, 광고, 언론보도 등에서 'VIVID'는 원고의 대표 표장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던 'Volvik'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(옆 사진 참조), 이러한 제품, 포장, 광고, 언론보도 등을 접한 수요자들이 'VIVID'를 위 대표 표장 'Volvik'과는 별개인 원고 회사의 서브브랜드(sub-brand)로서 인식하거나 'Volvik Vivid'의 요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이와 같은 인식이 어렵다고 보는 이상 'VIVID'가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.



첨부: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나2047941 판결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